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3. 9. 6.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9월 6일(수) 14:00~18:22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종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3년도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2023년도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52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53호 『서울신용평가(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제이원홀딩스(주)도 최대주주인 SCI평가정보(주)의 최대주주로서 대주주의 지위에 있는지?

- (보고자) SCI평가정보(주)의 대주주임.

○ (위원) 그런데 주요주주가 추가취득을 통해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본인은 이미 한번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대주주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미 SCI평가정보(주)의 최대주주로서 제이원홀딩스(주)는 적격하게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또 대주주 승인을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이원홀딩스(주)가 SCI평가정보(주)를 매각하려는 것 때문인지?

- (보고자) 현재 제이원홀딩스(주)는 SCI평가정보(주)를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다만,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는 지배구조법상 대주주에서 최대주주로 판단할 때는 본인에게 출자한 지분이 30% 이상이 되어야 최대주주로 보고 심사를 진행 하나, 현재 제이원홀딩스(주)는 SCI평가정보(주)를 30% 미만인 13.06%를 갖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서울신용평가의 주식 15%를 새롭게 취득한다고 봐서 심사대상으로 올렸음.

○ (위원) 제이원홀딩스(주)는 최대주주가 아닌 것으로, 아예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0% 이상을 취득하기 때문에 심사를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했음.

- (보고자) 맞음. SCI평가정보(주)의 최대주주는 (주)진원홀딩스라는

다른 회사임. 제이원홀딩스(주)는 13.06%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가 있어서 최대주주는 아님.

○ (위원) 만약 제이원홀딩스(주)가 당초 SCI평가정보(주)의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는데, 서울신용평가(주)의 지분을 취득한다면, 일종의 손자회사로 가지고 있던 것을 자회사 식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이런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 (보고자) 그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 같이 엮이게 되어서 가장 최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별도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음. 이미 예전에 다 심사대상이 되어서 그때 한 번 걸러졌을 사항임.

○ (위원) 외국계증권사 지점의 경우 조직변경에 대해서 승인이 아니라 보고제도로 갈음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한 적이 있었음. 지금 보고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확인해 주셔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가 맞다면 굳이 이렇게 별도의 사전변경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됨. 만약 사전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향후에 자본시장과와 자본시장감독국이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이나 규제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54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46호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장) 실권주 관련 IPO과정에서의 해외사례가 있으면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간단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음.

- (보고자) 해외에서도 규정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음. 다만, 계약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경우에도 단기에 파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들었음.

○ (위원) 실권주가 발생한 43건의 40% 정도가 30일 이내에 매각이
됐는데, 2017년 10월12일 유권해석 이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보고자) 금융위 유권해석이 발표가 되면 다 공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업계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임. 증권업계의 법규준수 의식이
미진한 부분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음.

- (위원) 특정 증권사 한두 군데가 아니라 주요 증권사가 다 들어가 있어서 이 유권해석의 의미가 업계에 명확하게 다 인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임.
- (보고자) 법규를 준수한 회사가 비율적으로는 더 많이 있었던 상황임. 유권해석 내용을 보면 SPAC과 관련한 유권해석이기는 했지만 회신 과정에서 모든 주식에 전부 다 적용이 되고 그 부분들이 실권주도 포함해서 적용된다는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계 쪽에서 이런 것에 대한 법규의 확인이라든가, 준수 의지가 소홀한 부분에서 기인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
- (위원) OOO의 SPAC의 경우에는 구주가 있고 실권주로 뜬 것이 있을 텐데, 이 사례는 무엇을 판 것인지? OOOO 사례는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되는데 OOO 사례가 SPAC 사례인데 SPAC에 따른 유권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때 조치를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인지?
- (보고자) 그러함. 과태료 부과가 면제됐음.
- (위원) 그러니까 OOO의 SPAC의 경우에는 최소 5%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구주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실권주를 떠서 두 가지 종류의 주식을 다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때 판 것은 무엇을 판 것인지?
- (보고자) OOO 사례에서는 실권주를 매각한 사례로 알고 있음.

말씀대로 그 안에 구주가 포함되어 있었으면 당연히 과태료 면제가 될 사항은 아니었을 것임.

- (위원) 그것이 구분이 되는지? 이런 논의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구주를 높게 처분할 목적으로 공모가를 높게 잡는 등 이해관계와 얽혀서 주가가 인위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취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할 하는데 실권주 뜨는 것은 높게 형성이 되면 사실 본인도 비싸게 사는 것임. 두 번째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위반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음. 만약 공모가가 높게 산정이 되어서 실권이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면 상장된 이후에 정상주가를 찾아가기 전에 단기간 내에 물량을 팔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것이 그 취지와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임. 왜냐 하면 다른 회사들도 나름대로 다 검토 하고 이 행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런데 이 유권해석이 나간 이후에도 이렇게 전체 실권주 발생의 40%가 팔렸다는 것 자체가 이 조문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40%가 다 이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위반 여부에 대한 얘기가 아님.

- (보고자) 유권해석 이후에 60%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규정 준수를 위해서 30일의 안정화 기간 동안에는 매도를 하지 않고 매각을 했다는 부분들이 다수였다는 것, 그런 부분들은 유권해석을 통해서 거둬 확인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음.

○ (위원) 저도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고,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봄. 두 번째 유권해석도 있고, 그런데 여기 동기나 위반의 결과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갈 것인가, 만약 40% 정도 되는 정도의 위규 행위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제재를 하더라도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임.

- (보고자) 검사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모호한 점 때문에 업계 쪽에서 금융위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래서 두 차례에 걸친 유권해석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업계의 수요가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함. 다만, 업계의 그런 불확실한 점은 저희가 봤을 때에는 유권해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런 모호한 점은 다 해석이 됐다고 저희는 봤고, 법령의 취지라든가 유권해석을 통해서 본 건 위법 여부 판단에는 무리가 없겠다는 것이 검사반의 판단이었음.

○ (위원) 지난 제재심에서 이것이 유권해석 나온 이후의 위반이기 때문에 위반의 결과를 '보통'에서 '중대'로 상향 조정했던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그런데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일반기업 실권주 처분 현황을 보면,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 2018년 실권주 처분 현황 중에 4개의 증권사가 위반행위로 나타나고 있음.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유권해석이 나가기는 했지만 이것이 업

계에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됐거나 업계에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듦. 그래서 이 건을 제재심에서의 수정대로 '중대'로 의결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데, 어떠신지?

- (보고자) 객관적으로 공표가 된 유권해석이 있던 상황에서 위반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금융회사의 준법의지의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왜 발생했느냐는 저희가 그 원인이나 그런 부분까지 알기 어려운 한계는 있음.

○ (위원) 알겠음.

○ (위원) 제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 그런데 신분제재가 들어가는 결과가 '보통'에서 '중대'로 변경된 것이 다른 두 분 위원님들과 동일하게 우려가 있음.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다른 기관들의 위반사례도 계속 제재가 들어갈 텐데, 그 건마다 5년 전에 있었던 것을 신분제재까지 한다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함.

○ (위원장) 유권해석 이후에 SPAC 포함해서 30일 이내에 실권주 매각한 16건의 사례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전부 다 다시 검사를 해서 제재안을 올릴 생각이신지?

- (보고자)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된 건이니까 이 부분들은 검사 후에 어떤 처분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

- (위원장)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증선위에서 원안이든 수정의결을 했을 때, 만약 수정의결이 된다면 신분제재 부분은 제재심에서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연동되는 것인지?
- (보고자) 말씀대로 이 건뿐 아니고 제도개선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음. 그것의 일환으로 봐야 될 텐데, 만약 과태료 부분들이 감액되거나 했을 때 기존의 신분제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런 절차를 어떻게 할지는 금감원과 금융위 해당 과가 논의를 하고 있음. 그 틀 내에서 개별 사례로 그 건에 맞춰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음.
- (위원장) 제가 안전검토소위원회도 참석하고 지난번에 금감원장님께서 금융위원회 오셔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음. 제재심에 금감원장 위임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위 결정을 존중해서 최종적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으니까, 증선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신분제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14시 37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 (위원장) 제146호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겠음.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조치안에 대해서는 위반결과와 관련하여 제재심에서 결정한 총액인수계약과 관련한 해당 금융회사의

책무 등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반결과를 '보통'에서 '중대'로 변경한 제재심의 결정사항을 존중함. 다만, 위반동기 부분에 있어서는 위반시점에 유사한 위반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본 건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변경하여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0만 원에서도 4,000만 원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의결안건 제156호 『○○○○○○○○(주)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의결안건 제157호 『씨앗자산운용(주) 등 8개 대상자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 공시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씨앗자산운용(주)는 2018년부터 롱·숏(long·short) 기반 주식형 절대수익형 펀드를 운용하고 있음. 전략상 롱 포지션(long position)을 헷지(hedge)하기 위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일부 보유하게 되어 있음. 그래서 저희가 일별로 그 보유내역에 대해서 공시 또는 보고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운용 첫 해인 2018년 11월에 하루에 해당하는 보고 및 공시를 누락하게 되었음. 저희 해당업무를 담당하던 팀장이 휴가를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직자라든지, 시스템적으로 보완(cover)하는 장치를 나름대로 잘 만들어 놨습시다라는 처음이다 보니까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하루에 해당하는 날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래서 원래 보고해야 되는 날보다 이틀 후에 지연보고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하지만 지연보고의 내용이 하루에 그쳤고 이틀 후에 보고가 되었고 저희가 공시한 종목에 대해서 지연보고된 해당 날짜의 주식 수에 변화도 없었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피해로 귀결된 부분은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액티브펀드 운용, 주식형 운용하는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들이 좀 많이 위축되고 어려움. 여러 가지 규제적인 요인도 있고 펀드 사태 이후에 판매사들의 책임이 늘어나면서 펀드판매를 기피하면서 저희 액티브펀드, 롱숏펀드 운용하는 쪽이 기관투자자로서 선량한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도 단기적으로 경영상 쉽지 않은, 수익측면에서 쉽지 않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임. 그래서 저희 업무실수로 과태료가 부과된, 피치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들을 좀 감안해서 감경이 된다면 경영상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 (위원장) ★★★ 대표님 지난번 자조심에서도 출석하여 진술을 해주셨음. 취지는 충분히 위원님들께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함. 금감원도 이런 정황을 감안해서 경과실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음. 오늘 증선위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58호 『NH투자증권(주) 및 신한투자증권(주)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펀드신속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본 건 시리즈 이슈로 10여 차례 감독당국에 심려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양정을 앞두고 증선위 위원들께 몇 가지만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경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시리즈 전체 이슈로 5~6년 전 판매한 신탁상품으로 10여 차례 동일한 과징금을 계속 받고 있음. 저희뿐만 아니라 업계의 다른 금융회사들도 똑같이 제재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배경상 마치 형사범이라면 수 개의 동종행위이면 포괄일죄나 상습으로 한꺼번에 제재를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개별적으로 10여건 이상 계속 제재를 받게 되는 점에 대해서는 전체 배경으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함. 두 번째로, 당사는 DLS의 발행사가 아니라 증권신고서 작성의 원래 주체가 아닌 판매사나 신탁사임. 본 건에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도 신탁사를 주선인으로 보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법률 이슈(issue)가 있고 이미 하급심 판례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음. 한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상세한 다툼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저희가 발행사가 아닌 판매사라는 점을 전체 배경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림. 마지막으로 오늘 상의를 요청 드리고 싶은 사항은 본 건 펀드의 경우에는 펀드 신탁의 기초가 된 2개의 DLS 기초자산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닌지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림. 본 건 2개의 DLS 기초자산이 저희 요약된 한 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만기가 18개월이나 24개월로 차이가 있음. 또한, 투자자가 그 만기를 단축할 수 있는 다른 옵션도 없고 실제 상환도 6개월의 차이가 있음. 또 전체적으로 본 건은 정상상황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의 피해도 전혀 없음. 본 건 SPC처럼 자금이 제한된 회사의 경우에는 가령 어떤 대주가 먼저 변제를 받고 6개월 이후

에 다시 변제를 받으면 사실상 선순위·후순위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상품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이기 때문에 설령 본 건이 동일한 자금조달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하더라도 다른 상품이 아닌가 하는 점을 재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가령, 회사채의 경우에도 같은 날 발행하더라도 만기가 다르면 10-1차, 10-2차처럼 서로 다른 신고서를 쓰고 발행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동일한 자금조달 목적만으로 같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건 시리즈 이슈(issue)들이 대부분 해외상품들임. 당시의 인식은 각 수 십건마다, 개별상품마다 위반의 의식을 가지고 발행했는지 아니면 당시 5년 전 기준으로는 CAYMAN 펀드상 클래스, 시리즈, 로그(log)로 구분된 것은 다른 상품으로 인식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본 건에도 일반투자자가 2개로 나뉘어서 전체 59인인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만약 위반에 대한 확실한 범의가 있었다면 충분히 9명을 줄여서 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으로 해서 개별 건마다 같은 상품으로 봤다기 보다는 전체적인 시리즈 이슈에 대한 만연한 인식이 있지 않았느냐, 이 부분도 배경으로 생각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본 건이 만기가 다른, 기초사실이 다른 상품이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요청 드립니다.

- (위원) 주장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만기의 차이를 이유로 기초자산이 다르니까 2개의 기초자산 성격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신지?

-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리고 아까 의도적이었다면 인원을 더 조정했을 것 이라는 주장이었던 것 같은데, 맞는지?
 - ▶ (진술인) 가정적인 말씀으로 범위반이라는 확실한 인식이 있었다면 이 건이 100~200명도 아니고 전체 합산해서 59명이었으면 아마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도 배경으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면서 말씀드렸음.
- (위원) 아까 하급심에서 정리됐다는 판결은 어떤 판결인지?
 - ▶ (진술인) 소위 ㄴㄴㄴㄴㄴ 판결이라고 해서 신탁판매사나 이 부분이 주선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심과 2심이 나온 그 판결을 말씀드린 것임.
- (위원) 2심에서 주선인에 대한 명백한 판결을 했는지?
 - ▶ (진술인) “사실상 동일한 증권”에 대한 판단이 1심과 2심이 달랐던 판결임. 해당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서 심리가 이루어 지지는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었고 아직까지 대법원 판단은 없었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었음.
- (위원) 2심에서는 신고서 미제출 위반이 맞다고 1심과 달리 판단을 한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만기 차이나는 6개월, 그것이 GP의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부탁 드림.

▶ (진술인) GP의 옵션은 아니고 만기가 18개월이 있고 2년짜리가 2가지 있는 것이고 어떤 옵션이 있다기보다는 만약 2년짜리 DLS 의 경우에도 그 상황이 조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고 그것을 어떤 투자자나 발행사가 일부러 연장한다거나 그런 옵션이 있었던 것은 아님. 포현에 있어서 방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조기에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임.

▶ (진술인)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령 만기가 같다면 자금이 제한적인 SPC에서 각 대주들이 안분해서 자산을 가져갈 것인데 만약 이렇게 만기가 6개월 차이가 있다면 만기가 짧은 사람은 상황을 전체 받을 수 있는데 만기가 뒤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래의 실무상으로도 만기가 다르면 사실상 선순위·후순위의 차이만큼은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는 그 말씀을 드림.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Tranch 2의 경우는 명목상의 만기는 1.5년이 아니라 2년이나 콜(call)이 있어서 조기상황이 가능해서 실질적으로는 1.5년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 (보고자) 기본만기는 1.5년으로 동일하고 Tranch 2에 대해서는 만기에 연장옵션이 붙어있었던 것임.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59호 『(주)하나은행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펀드신속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저희 건은 (주)하나은행이 판매한 10개의 사모펀드에 관하여 총 3건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9억 5,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예정이 통지된 건임. 이 건에 대하여 저희는 순서대로 일단 본 건에는 공모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두 번째는 공모규제가 적용되어도 (주)하나은행은 주선인이 아니고 ‘고의’, ‘중과실’이 없어서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됨. 마지막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감면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음. 먼저, 첫 번째 쟁점인 본 건 펀드의 수익증권은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음. 본 사안과 같은 시리즈펀드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사례(leading case)인,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

달하고자 하는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데 본 사안 ㄹㄹ ㄹㄹㄹㄹㄹㄹㄹㄹ의 경우에는 SPV가 발행한 Note, ♣♣ ♣♣♣의 경우에는 해외펀드가 투자대상이었다는 것들은 회사채와 다르게 물량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투자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을 소화하려고 인위적으로 잘라서 판매할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 펀드에서 운용사가 한 개였던 것과 달리 본 사안은 모든 펀드의 운용사가 다 달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다음으로 과징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판단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은 판매사인 (주)하나은행을 주선인으로 인정해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목했는데 판매사와 주선인은 법률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주선인은 보수를 발행인으로부터 받지만 판매사는 투자자 또는 펀드로부터 받는다는 차이가 있음. 주선인의 개념 자체가 '발행인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 지급의 원천(source)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 드리는 것인데 본 사안인 (주)하나은행 역시 전형적인 판매사로서 보수를 펀드와 투자자로부터 받았다는 점임. (주)하나은행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주선인이 아닌데 혹시라도 (주)하나은행이 마치 주선인처럼 행동하였는지 이것이 문제될 수 있고 이 점을 자조심에서 저희가 논의를 했었음. 논의과정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저희의 입장은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임.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징금 부과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본 건 펀드가 판매될 당시에는 공모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

적 쟁점들, “같은 종류의 증권”인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인지 이런 공모 규제 적용 여부와 판매사의 경우 주선인인지, 주선인일 때 과징금이 부과되는지 이런 여러 쟁점들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확립된 규제가 없었음. 따라서 판매사가 알 수도 없었고 위반가능성을 예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말씀 올리고 싶음. 다음으로 설령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감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림. 저희가 이 부과산식을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하셨는지를 알지 못해서 추정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만 말씀드리겠는데 부과비율이 사실 중요함. 이 부과비율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감안사유에 의해서 결정되고 저희는 중요도는 ‘하’이고 감안사유는 하향조정사유가 발생해서 100분의0.1이 적용되어야 함. 왜냐하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음.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운용기간인데 이 운용기간을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하는지, 특히 본 사안처럼 일부 펀드들이 환매가 중단된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저희가 대략 계산해 봤는데 아마도 금감원에서는 운용기간 계산하실 때 각 펀드의 실제 만기일, 원래 정해져 있던 만기일이 아니고 환매중단 기간까지 운용기간에 포함시키신 것이 아닌가 하고 금액상 저희가 추측을 해 봤음. 그런데 만약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판매사 입장에서 다소 억울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왜냐하면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었는지 여부는 판매사가 통지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사의 귀책과 무관하게 환매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전부 과징금 산정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다소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음. 다음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면 투자자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경감하라고 되어 있는데 본 건의 경우 환매중단된 펀드들이 있지만 일부가 정상상환되었고 중단된 펀드들도 분조위 배상이나 자율적 배상을 통해서 상당부분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 드림. 과징금의 금액이 현저히 과도하면 감면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주)하나은행의 경우에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이미 판매되었던 ☞☞☞☞☞와 관련하여 동일한 시리즈펀드 공모 규제 위반이 문제되어 6억 4,73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현재 행정소송 중임. 그런데 유사한 기간에 판매되었던 본 건 펀드들을 이유로 또 다시 9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을까, 그리고 유사한 기간에 많은 펀드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판매가 되었는데 규제가 확립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 판매되었던 펀드들이 동일한 시리즈펀드 이슈로 제재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제재가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판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음.

- (위원) 손해를 배상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좀 감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독당국은 본 건의 경우 투자자 피해를 배상하기는 했지만 그 배상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것이므로 증권신고서 미제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감경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진술인) 감독당국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를 그렇게 이해하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본 사안 투자자들의 피해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공모 규제 위반 때문인가 아니면 불완전판매 때문인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기는 합시다라는 일단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분조위 배상이나 여러 가지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시리즈 펀드 이슈(issue)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함. 저희가 이 장표에서는 정상상환이나 뭔가 배상을 통해서 후발적으로 피해가 사라졌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그 논리에 따른다면 애초에 공모 규제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장표에서 설명 드리는 부과기준의 경감 요소에 정확히 들어맞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저희가 감히 말씀을 드려 보겠음.

○ (위원) 운용사는 제재가 있었던 것 알고 있으신지?

▶ (진술인) 판매사 입장에서는 운용사의 제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함.

○ (위원) 있었던 것을 지금은 알고 있는지?

▶ (진술인)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함.

○ (위원) 운용사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 아직 이 건으로 (주)하나은행은 책임진 것이 없는 것인지?

- ▶ (진술인) (주)하나은행의 ☆☆☆임. 지난 자조심에서 추가질문 주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부연 설명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이 편드를 담당했던 ★★★ 차장, (주)하나은행의 직원인데, 이 직원은 지금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 차장의 주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추가근거들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음. 자조심에서 답변 드리기로는 저희가 개인 혐의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제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음. 다시 한 번 확인해 봤고 그 부분이 동일한 상황임. 대신에 저희가 자료를 계속 찾아 보니 OOOOOO의 담당자들이 저희 (주)하나은행 후임 담당자에게 사태를 뭔가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보내온 Email 자료가 확인되었음. 그 자료에 말씀드렸던 형사재판에서 증거서류로 오가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 일단 자료를 준비해 오기는 했음. 미리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도 계속 찾아 보니까 직전에 확인하게 되어 자료를 가지고는 왔는데 유선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전달해 드리거나 공유해 드리기는 어려워서 일단 가지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진술인)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서는 소상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처음 듣는 말씀일 수 있어서, 이 쟁점은 판매회사에 불과한 (주)하나은행이 어떻게 주선인이 되느냐는 것과 관련된 쟁점임. 그래서 자조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것은 딜소싱 (Deal Sourcing)을 (주)하나은행의 ★★★ 차장이 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것에 대한 저희의 답변은 ‘이

펀드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판매가 되었는데 1차 때 딜소싱(Deal Sourcing)을 한 것은 ●●●●●●●과 ▲▲▲▲▲이었던 것임. 본 사안은 3차와 관련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1차 판매 이후로는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상품이였음. 그래서 2차, 3차는 사실 딜소싱(Deal Sourcing)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음. 그런데 이 펀드와 관련된 딜소싱(Deal Sourcing) 주체를 (주)하나은행으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3차 펀드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상품의 주요구조가 조기상환구조였는데 이 구조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주)하나은행의 ★★★ 차장이 주도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자료들이 현재 다른 소송에서 추가적으로 현출이 되고 있다는 맥락 하에서 말씀을 드린 것임.

- (위원장) 그 자료는 전달해 주시고, 어차피 이 과징금이 높기 때문에 금융위 의결까지 가게 됨.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또 추가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중과실’로 보는 이유가 2021년 2월9일에 둘 이상의 증권발행인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한다는 확인적 규정이 그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중과실’로 판단하신 건지? 예전에도 저희가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음.

- (보고자) 맞음.

○ (위원) 아까 진술인들에게도 질문 드렸던 사항인데 투자자 피해를 배상하기는 했지만 그 투자자 피해가 불완전판매에 관한 것이고 또 과거의 조치 선례도 있기 때문에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주장을 하고 있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증권신고서 미제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투자자 피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가 궁금함. 사실 투자자 피해라는 것은 원금손실 이외에 다른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권신고서 미제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투자자 피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함.

- (보고자) 일단 개념적으로는 사실 피해배상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분쟁조정 당시에 불완전판매였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또 고려했던 것은 사실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을 안 해주는데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일부라도 배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고민 속에서 조치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것을 말씀 드림.

○ (위원) 그런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제2항제3호를 보면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감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감면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면할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 (보고자) 연관성을 고려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음. 이전 조치 선례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지금 배상이 발생한 것은

제159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35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긴급 조치 결과보고』, 보고안건 제36호 『(주)○○○○ 등 61개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긴급조치 결과보고』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함.

- (위원) 이견 없음. 다만, 같은 증권대행 업무를 하는 다른 기관에서 혹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이번에는 □□□□□□이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 (위원장) 저희들이 이미 긴급조치(Fast Track)로 보내서 특사경으로 금감원이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 검사과정에 착안이 될 것임. 제35호, 제36호 안건은 각각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 각각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160호 『하이즈에셋자산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61호 『바로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62호 『피데스자산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저희 하이즈에셋자산운용(주)은 2018년도에 전문사 모운용사로 설립되었음. 금번에 지적된 사항은 2022년 9월에 금융감독원 종합감사를 1주일 간에 걸쳐 수감을 했음. 그래서 하이일드펀드의 편입비율 위반에 대해 3건을 지적 받았음. 하이일드펀드는 잘 아시다시피 투기등급 채권을 45% 이상 편입하고 공모주를 신청해서 받는 펀드이고 목표수익률은 대략 7~8% 정도를 추구하는 상품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하이일드펀드는 아주 소규모 영세한 펀드임. 그런데 수익자가 3개월 뒤에 환매한다는 부분을 통지해서 저희가 하이일드 편입 비율에 대한 부분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이 부분은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 3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임. 대외적으로 신뢰도에 훼손된 부분도 없었고 또 투자자에게 피해가 간 부분도 없었음. 제가 오늘 말씀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바임.
- (위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림. 첫 번째,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바람.
- ▶ (진술인) 마침 하이일드채권의 만기가 되었는데 공모주 수요 예측을 참여 안 하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채권을 편입하지

않아서 그 기간만큼 위반기간으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위반한 일수에 포함되어 저희가 지적을 받은 것임.

○ (위원) 수익자로부터 환매 예고가 있었는지?

▶ (진술인)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사모운용사는, 개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기관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저희가 2~3개월 뒤에 환매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환매를 해 드려야 됨.

○ (위원) 운용비율 위반에 대해서 수익자나 이런 쪽과 분쟁이 있거나 하는 것이 있는지?

▶ (진술인) 전혀 없음.

○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모주 우선배정을 받지 않은 것이 비율 미충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인지?

▶ (진술인) 맞음. 환매를 앞두고 있어서 저희가 아예 공모주 신청을 하지 않았음.

○ (위원) 저도 ○위원님과 비슷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단 하이일드펀드가 있고, 그런데 기관 한 곳이 환매를 할 것이고 마침 그때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하이일드채권이 만기가 되니까 2~3개월 동안 새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환매할 때 유동성을 고려해서 제값을 못 받고 팔 것 같으니까 만기된 하이일드채권 그대로 만기되도록 놔두고,

그래서 비율위반이 생겼다는 말씀이신지?

▶ (진술인) 맞음. 공모주는 저희가 신청 안 함.

○ (위원) 실제 환매가 이루어졌는지?

▶ (진술인) 정상적으로 환매가 이루어졌음.

○ (위원)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데, 코넥스 하이일드펀드 두 가지가 있는데 전문형과 일반형, 그리고 15억 원과 20억 원 규모이고 환매를 예고한 기관 한 곳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0%를 넘는다는 것은 확인하신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공모펀드가 아니라 사모펀드에서 집합 투자규약 위반은 사실 계약위반을 행정제재로 다루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행정제재로 가능한 하지만 그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이나 경위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양정수준의 공모주 우선배정요건을 위반해서 우선배정을 못한다고 처음에 소명을 듣기 전에도 잠재적인 투자기회를 가지고 피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경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진술하신 내용이 팩트(fact)가 맞다면 어찌되었든 위반이라고 볼 소지는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더라도

‘보통’으로는 과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경미’로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임.

- (위원)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음. 위반행위의 결과를 ‘보통’에서 ‘경미’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 (위원) 금감원의 문구(wording)를 보면 ‘보통’이라고 하셨을 때 우선배정요건을 위반해서 우선배정을 받지 못하는 등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쓰셨음.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함. 그 이야기는 피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더더욱 ‘보통’으로 하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의견임.
- (위원장) 저도 세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의견임. 더구나 환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중소운용사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피데스자산 운용(주)도 별도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음. 위반결과가 하이즈 에셋자산운용(주)과 바로자산운용(주)은 ‘보통’이지만 피데스자산 운용(주)은 100만 원 위반에 그 위반결과를 ‘경미’로 한 것이 있음. 그래서 저는 피데스자산운용(주)의 경우에는 설정 초기에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하겠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 들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계하기보다는 감면을 하고 확약 서라든지, 규정 미비한 것이 있으면 규정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이렇게 100만 원 받아 놓은 것에 대해서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저희들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 (보고자)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하신 말씀이 맞음.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면 잠재적인 위반인 것은 맞음. 다만, 규약이라는 것 자체가 투자자와의 약속이었고 사실 하이일드펀드이기 때문에 5%를 받기 위해서 했던 것임. 그런데 본인이 알고도 들어가지 못했음. 공모주에, 그런 것을 투자 위반으로 봐서 저희가 위반이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형식적인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네 분 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사실 이 건을 꼭 '보통'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투자자에게 피해가 있었다고 봤던 부분인데 잠재적인 손해를 위반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느냐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위원장) 제161호부터 제162호까지 안건은 다음과 같이 의결 하겠음. 하이즈에셋자산운용(주)과 바로자산운용(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집합투자규약이 사적계약이라는 측면, 그리고 위반이 환매 대응과정에서 일시적인 한도 위반으로 나타났다는 점, 사모운용사의 최근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반결과를 '보통'에서 '경미'로 수정하여 과태료를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수정의결하고 피데스자산운용(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집합투자규약이 사적계약이라는 측면, 그리고 설정초기 짧은 위반기간으로 금융거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는 점, 위반금액 100만 원이 투자가능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면하고 확약서 제출로 같음하도록 하겠음. 예외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로 지도공문을 발송하여 지도하시기 바람. 이상 3건을

이렇게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 각각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163호 『(주)밸류시스템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64호 『기흥농업협동조합 등 3개 농협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물론 다른 기관의 펀드들도 있지만 NH-Amundi 것이 제일 많은데,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지는 않은지가 궁금함.

- (보고자)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상으로 펀드판매사의 계열운용사 펀드 비중을 연간 25%로 제한을 하고 있음. NH-Amundi 펀드가 일부 있지만 이 법규정에 따른 한도는 준수하고 있음.

○ (위원장) 전체 단위농협에서 파는 펀드 규모가 100억 원으로 들은 바 있음. 판매현장인 농협중앙회라든지 우체국이 무엇을 더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당국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보고자) 금감원에서 단위농협의 펀드판매 현황이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점검을 금년 중에 진행하실 계획임. 그 진행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8시 22분 폐회)